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98호 2019. 7. 29.(월)

규 칙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훈 령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발령 ----- 5

고 시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3

회람							
----	--	--	--	--	--	--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29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77호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을 별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 붙임] 별표 1

1. 제작 규격

구 분	용량(ℓ)	몸체치수(cm)	밑도(올5cm)	섬도(D)	비 고
		넓이 × 길이	넓이 × 길이	경사·위사	
종량제마대	20	42×69.5(±2)	20×20(±2)	850(±10%)	

2. 공급 및 판매가격

품명	용량(ℓ)	공급액	판매수수료 (9%)	판매가격	비고
종량제마대	20	1,820원	180원	2,000원	

3. 인쇄 문구

점선 위쪽은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20ℓ)

1. 이 마대는 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 버릴 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외에 집수리 등(옥조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가연성+불연성)을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음식물쓰레기,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후 ~ 일출전
토요일 배출금지**

목 포 시 장

연락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270-8502, 850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마대의 제작 사양 및 가격은 별표1과 같다.																								
<신설>	[별표 1] 1. 제작 규격 <table><tr><th>구분</th><th>용량(L)</th><th>몸체치수(cm) 넓이 × 길이</th><th>밑도(올5cm) 넓이 × 길이</th><th>섬도(D) 경사·위사</th><th>비고</th></tr><tr><td>종량제마대</td><td>20</td><td>42×69.5(±2)</td><td>20×20(±2)</td><td>850(±10%)</td><td></td></tr></table> 2. 공급 및 판매가격 <table><tr><th>품명</th><th>용량(L)</th><th>공급액</th><th>판매수수료 (9%)</th><th>판매가격</th><th>비고</th></tr><tr><td>종량제마대</td><td>20</td><td>1,820원</td><td>180원</td><td>2,000원</td><td></td></tr></table> 3. 인쇄 문구 점선 위쪽은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목포시 불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20ℓ) 1. 이 마대는 유리류(꽃병, 유리, 거울 등), 자기류(사기그릇, 화분, 도자기 등), 타일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 버릴 때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외에 집수리 등(목조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가연성+불연성)을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재활용품(종이류, 권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 음식물쓰레기, 지정폐기물은 이 마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시간 : 일몰후 ~ 일출전 토요일 배출 금지 목포시장 연락처 :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 ☎270-8502, 8503 팩스번호 : 270-8504 또는 270-8505	구분	용량(L)	몸체치수(cm) 넓이 × 길이	밑도(올5cm) 넓이 × 길이	섬도(D) 경사·위사	비고	종량제마대	20	42×69.5(±2)	20×20(±2)	850(±10%)		품명	용량(L)	공급액	판매수수료 (9%)	판매가격	비고	종량제마대	20	1,820원	180원	2,000원	
구분	용량(L)	몸체치수(cm) 넓이 × 길이	밑도(올5cm) 넓이 × 길이	섬도(D) 경사·위사	비고																				
종량제마대	20	42×69.5(±2)	20×20(±2)	850(±10%)																					
품명	용량(L)	공급액	판매수수료 (9%)	판매가격	비고																				
종량제마대	20	1,820원	180원	2,000원																					

목포시 훈령 제823호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7월 29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 제목 “보칙”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로 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를 각각 제68조부터 제71조로 하고,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앞에 “제11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수표 (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직근로자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보 수 원	환 미 화 경 원
		소 계	행 보	정 조	시 장 유	설 비 지	현 지 점	장 도 검	
계	532	352	267		52		33	14	166
감 사 실	2	2	2						
기 획 예 산 과	1	1	1						
문 화 예 술 과	5	5	4		1				
공 보 과	2	2	2						
세 정 과	9	9	9						
회 계 과	6	6	3		3				
자 치 행 정 과	9	9	9						
교 육 체 육 과	1	1	1						
사 회 복 지 과	12	12	12						
노 인 장 애 인 과	6	6	6						
여 성 가 족 과	53	53	53						
민 원 봉 사 실	12	12	12						
관 광 과	13	13	12		1				
지 역 경 제 과	1	1	1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1	1	1						
해 양 향 만 과	1	1			1				
안 전 총 괄 과	29	29	29						
건 축 행 정 과	2	2	2						
건 설 과	9	1	1					8	
교 통 행 정 과	27	27	1		9		17		
의 회 사 무 국	9	9	9						
보 건 위 생 과	4	4	3		1				
건 강 증 진 과	31	31	31						
하 당 보 건 지 소	29	29	27		1		1		
환 경 보 호 과	2	2	2						
자 원 순 환 과	167	1	1						166
환 경 시 설 관 리 과	4	4			4				
수 도 과	9	9	2		1		6		
하 수 과	7	1	1					6	
남 해 환 경 관 리 과	1	1	1						
북 향 환 경 관 리 과	3	3	1		2				
도 시 재 생 과	1	1	1						
도 시 문 화 재 과	4	4	4						
공 원 녹 지 과	15	15	1		14				
문예시설관리사무소	10	10	6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14			5		9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16	16	11		5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소	5	5	5						

2. 청원경찰

부 서 별	계	경비,청원경찰	비 고
총 계	22	22	
소 계	6	6	
자 치 행 정 과	4	4	
건 설 과	2	2	
소 계	2	2	
의 회 사 무 국	2	2	
소 계	14	14	
환 경 시 설 관 리 과	3	3	
수 도 과	3	3	
문 예 시 설 관 리 사 무 소	1	1	
체 육 시 설 관 리 사 무 소	4	4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3	3	

※ 1. 단순노무

- 행정보조 : 비서, 컴퓨터입력, 전산보조, 보건업무, 행정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에 종사
 - 시설물관리 : 주차장관리, 시설청소 등 단순잡역 종사
 - 현장지도점검 : 주차단속 및 현장업무, 각종 강사, 계량기교체 등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 하수도준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3. 환경미화원 : 청사 및 청사주변 쓰레기수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용된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장 보칙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1장 보칙
제66조(손해배상) 이하 생략	제68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제67조(재해보상) 이하 생략	제69조(재해보상) 현행과 같음
제6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이하 생략	제7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하 생략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과 같음

[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별표 1] 공무원근로자 정수표(제6조 제4항 관련)							
1. 공무원근로자								1. 공무원근로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소계	행정보조	시설장비유지	현장지도점검		
계	531	351	266	52	33	14	166	계	532	352	267	52	33	14	166
감사실	2	2	2					감사실	2	2	2				
기획예산과	1	1	1					기획예산과	1	1	1				
문화예술과	5	5	4	1				문화예술과	5	5	4	1			
공보과	2	2	2					공보과	2	2	2				
세정과	9	9	9					세정과	9	9	9				
회계과	6	6	3	3				회계과	6	6	3	3			
자치행정과	9	9	9					자치행정과	9	9	9				
교육체육과	1	1	1					교육체육과	1	1	1				
사회복지과	12	12	12					사회복지과	12	12	12				
노인장애인과	6	6	6					노인장애인과	6	6	6				
여성가족과	53	53	53					여성가족과	53	53	53				
민원봉사실	12	12	12					민원봉사실	12	12	12				
관광과	13	13	12	1				관광과	13	13	12	1			
지역경제과	1	1	1					지역경제과	1	1	1				
알리안정책과	1	1	1					알리안정책과	1	1	1				
해양항만과	1	1		1				해양항만과	1	1		1			
안전총괄과	29	29	29					안전총괄과	29	29	29				
건축행정과	2	2	2					건축행정과	2	2	2				
건설과	9	1	1		0	8		건설과	9	1	1			8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교통행정과	27	27	1	9	17		
의회사무국	9	9	9					의회사무국	9	9	9				
보건위생과	4	4	3	1				보건위생과	4	4	3	1			
건강증진과	31	31	31					건강증진과	31	31	3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하당보건지소	29	29	27	1	1		
환경보호과	2	2	2					환경보호과	2	2	2				
자원순환과	167	1	1				166	자원순환과	167	1	1				166
환경시설관리과	4	4		4				환경시설관리과	4	4		4			
수도과	9	9	2	1	6			수도과	9	9	2	1	6		
하수과	7	1	1			6		하수과	7	1	1			6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남해환경관리과	1	1	1				
북항환경관리과	3	3	1	2				북항환경관리과	3	3	1	2			
도시재생과	1	1	1					도시재생과	1	1	1				
도시문화재과	3	3	3					도시문화재과	4	4	4				
공원녹지과	15	15	1	14				공원녹지과	15	15	1	14			
문예시설관리과	10	10	6	4				문예시설관리사무소	10	10	6	4			
체육시설관리과	14	14		5	9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14		5	9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목포자연사박물관	16	16	11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자동차등록사무소	5	5	5				

비용소요 추계서

1. 관련 법규명

○ 목포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2.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

구 분	증감 인원	소요비용 내역 (원)			비고
		인원	1인당 보수액	총 금액	
증원	1	1	31,354,940	31,354,940	3호봉

3. 비용 소요 내역

(일반직군 3호봉 기준)

구 분	소요비용(원)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31,354,940		
○ 인건비	28,538,310		
- 기본급	17,230,200	1,435,850원*12월	
- 수당	11,308,110		
·상여금	5,743,400	1,435,850원*400%	
·직무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정액급식비	960,000	80,000원*12월	
·교통보조비	600,000	50,000원*12월	
·조정수당	1,200,000	100,000원*12월	
·명절휴가비	861,510	1,435,850원*30%*2회	
·연가보상비	743,200	74,320원*10일	
○ 이전경비	2,816,630		
- 국민건강보험금	860,440	(인건비-정액급식비)*3.12%	
- 장기요양보험금	63,500	(국민건강보험금)*7.38%	
- 국민연금	1,241,020	(인건비-정액급식비)*4.5%	
- 고용보험금	413,670	(인건비-정액급식비)*1.5%	
- 산재보험금	238,000	(인건비-정액급식비)*0.863%	

4. 작성자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장 강 명 원

목포시 고시 제2019-152호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및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97호(2019. 4. 4.)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 변경과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목 포 시 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대양일반산업단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호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56번길 12-20(대양동)

○ 오수중계펌프장, 진입도로, 해수유입시설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목포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서남부권의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내 산업 용지 수요급증으로 용지공급의 불균형 해소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1단계 사업으로 반영되어 이와 연계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과 해양관련 산업 등을 유치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지역 고용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나. 사업의 개요 (변경)

1) 유치업종 (변경)

○ 기정

- C10 식료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연마재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 변경

- C10 : 식료품 제조업, C12 : 담배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네거티브(제한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변경)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54,164.9	-	854,164.9	-		
산업1	54,474.8	-	54,474.8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2	58,934.9	-	58,934.9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3	31,343.0	-	31,343.0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료품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4	81,121.9	-	81,121.9	C10 : 식료품제조업(4-1,2,7 획지만 해당)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10 : 식료품제조업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산업5	48,154.7	-	48,154.7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 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C23992연마재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망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6	81,854.7	-	81,854.7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스템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7	90,903.0	-	90,903.0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연마재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제한업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망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8	89,333.7	-	89,333.7	<제한업종>	<제한업종>	

구 분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연마재 제조업 제외) C28 : 전기장비제조업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C1392끈로프망및망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산업9	54,997.6	-	54,997.6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0	54,548.9	-	54,548.9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1	46,227.1	-	46,227.1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2	20,292.3	-	20,292.3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 전기장비제조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3	33,767.8	-	33,767.8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4	48,332.2	-	48,332.2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산업15	17,079.9	-	17,079.9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2 : 담배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기구제외,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산업16	42,798.4	-	42,798.4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2 : 담배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기구제외,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545,006.8	-	1,545,006.8	100.0	-	100.0	
산업시설용지	854,164.9	-	854,164.9	55.3	-	55.3	
지원시설용지	92,186.8	-	92,186.8	6.0	-	6.0	
공공시설용지	597,785.8	-	597,785.8	38.6	-	38.6	
도로	264,259.4	-	264,259.4	17.1	-	17.1	
주차장	9,277.0	-	9,277.0	0.6	-	0.6	
자동차정류장	91,476.9	-	91,476.9	5.9	-	5.9	
공공청사	21,873.8	-	21,873.8	1.4	-	1.4	
오수중계펌프장	500.0	-	500.0	-	-	-	
공원	51,306.7	-	51,306.7	3.3	-	3.3	
완충녹지	19,975.3	-	19,975.3	1.3	-	1.3	
경관녹지	139,116.7	-	139,116.7	9.0	-	9.0	
기타시설용지	869.3	-	869.3	0.1	-	0.1	
해수유입시설	187.4	-	187.4	-	-	-	
제방	681.9	-	681.9	0.1	-	0.1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 면 적 : 1,545,006.8m²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18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545,006.8	—	1,545,006.8	100.0	
도시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일반공업지역	1,545,006.8	—	1,545,006.8	100.0	산단 내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	대양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1189-1번지 일원	1,545,006.8	—	1,545,006.8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0	12,263.0	264,259.4	11	5,296.0	114,296.0	5	3,116.0	76,695.9	14	3,851.0	73,267.5	
대로	4	4,699.0	149,184.6	1	850.0	33,826.8	1	1,789.0	59,705.3	2	2,060.0	55,652.5	
중로	13	5,473.0	97,946.9	7	3,435.0	70,531.2	2	851.0	12,940.9	4	1,187.0	14,474.8	
소로	13	2,091.0	17,127.9	3	1,011.0	9,938.0	2	476.0	4,049.7	8	604.0	3,140.2	

※ 주 : 국토 1호선 우회도로(대로 1-7호선)의 경우 총 연장 4,540m 중 지구내 연장은 850m임

소로 1-110호선의 경우 총 연장 224m 중 지구내 연장은 53m임

○ 도로 세부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대로1류)		1개 노선			4,540 (850)						()는 구역내연장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4,540 (850)	대1-6 연산동 64-9도	대양동 교통광장 대양동 1074-31도	일반 도로	대양 근린 공원	전라남도 고시 제2000-129호 (2000. 7. 5)	국도1호선 우회도로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계 (대로2류)		1개 노선			1,789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789	대로1-7	대로2-2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소계 (대로3류)		2개 노선			2,060						
기정	대로	3	32	25	보조간선	1,646	대로2-19	중로2-70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41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1류)		7개 노선			3,435						
기정	중로	1	74	20	집산도로	1,118	대로2-19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09-372호 (2009. 9. 18)	
기정	중로	1	75	20	집산도로	175	대로2-19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6	20	집산도로	494	대로2-19	대로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7	20	집산도로	117	대로2-19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8	20	집산도로	1,074	대로2-19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9	20	집산도로	257	대로3-32	중로1-7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0	20	집산도로	200	대로3-32	중로1-76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2류)		2개 노선			851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250	대로3-32	소로3-398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1	중로2-70	대로3-32	일반 도로		〃	
기정	소계 (중로3류)		4개 노선			1,187						
기정	중로	3	93	12	국지도로	98	소로1-302	대로2-19	일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중로	3	94	12	국지도로	456	중로3-93	대로2-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5	12	국지도로	611	중로3-95	중로1-7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96	12	국지도로	22	중로3-95	대로2-19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계 (소로1류)		3개 노선			1,182 (1,011)						
기정	소로	1	110	10	국지도로	224 (53)	대1-6 용해동 578도	소로1-302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1987-80호 (1987. 6. 5)	()는 구역내연장
기정	소로	1	302	10	국지도로	460	소로1-110	중로3-94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1	304	10	국지도로	498	대 로3-32	중로1-78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계 (소로2류)		2개 노선			476						
기정	소로	2	663	8	국지도로	135	중로1-7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기정	소로	2	664	8	국지도로	341	중로2-70	중로2-70	〃		목포시 고시 제2017-99호 (2017. 06. 08)	
기정	소계 (소로3류)		8개 노선			604						
기정	소로	3	398	6	국지도로	28	중로2-70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399	6	국지도로	87	중로3-93	소로1-302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기정	소로	3	400	6	국지도로	39	소로1-302	소로3-399	일 반 도로		〃	
기정	소로	3	401	4	특수도로	247	중로1-74	경관녹지56	보행자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 11. 5)	
기정	소로	3	402	4	특수도로	103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3	4	특수도로	56	중로3-94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04	4	특수도로	16	소로1-302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보행자 도로		〃	
기정	소로	3	482	6	국지도로	28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소로1-304	일 반 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277.0	-	9,277.0	-	-
기정	80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6-2차	2,934.3	-	2,934.3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81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7-3차	651.7	-	651.7	”	”
기정	102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198-5차	3,969.6	-	3,969.6	”	”
기정	103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2-1차	555.6	-	555.6	”	”
기정	104	노외 주차장	목포시 대양동 1204-2차	1,165.8	-	1,165.8	”	”

다)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91,476.9	-	91,476.9		
기정	6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3차	28,511.0	-	28,5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7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목포시 대양동 1186차	62,965.9	-	62,965.9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9호에 따른 목포시장이 설치하는 공용차고지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95,444.0 (159,092.0)	-	195,444.0 (159,092.0)		()는 구역내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49공 일원 국도 1호선 대체우회 도로변	56,327.3 (19,975.3)	-	56,327.3 (19,975.3)	전남고시 제2000-129호 (2000.7.5)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54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38공 일원 대양산단 남측지구계	15,677.3	-	15,677.3	전남고시 제2009-372호 (2009.9.18)	"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10공 일원	14,953.7	-	14,953.7	"	"
기정	56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1공 일원 대양산단 동측지구계	35,643.4	-	35,643.4	"	"
기정	57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27공 대양산단 북측지구계	2,426.9	-	2,426.9	"	"
기정	58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9공 일원 대양산단 서측지구계	37,285.5	-	37,285.5	"	"
기정	59	녹지	경관 녹지	목포시 대양동 1250공 일원 대양 일반산업단지내 송전탑 선하부지	33,129.9	-	33,129.9	"	"

나)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51,306.7	-	51,306.7	-	-
기정	127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222공	18,808.0	-	18,808.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128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81-4공	18,287.7	-	18,287.7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기정	129	공원	근린 공원	목포시 대양동 1193-8공	14,211.0	-	14,211.0	전라남도 고시 제2014-394호 (2014. 12. 26)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21,873.8	-	21,873.8		-
기정	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3대 일원	4,000.0	-	4,000.0	전라남도 고시 제2015-403호 (2015. 12. 31)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1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864.1	-	5,864.1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2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6,858.2	-	6,858.2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기정	33-3	공공청사	-	목포시 대양동 1177-1대 일원	5,151.5	-	5,151.5	목포시 고시 제2018-122호 (2018. 08. 30)	대양일반 산업단지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하수도(변경없음)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오수중계 펌프장	목포시 대양동 1179-8잡	500	-	500	전남고시 제2010-323호 (2010.11.5)	대양일반 산업단지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127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808.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363.0	-	-	7.24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445.0	-	-	92.75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808.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363.0	-	-	-	
		도 로	1,363.0	-	-	-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	
		휴게쉼터2	-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445.0	-	-	-	
		녹 지	17,445.0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445	1,363.0	-	-	-	
소 로	진1	3	269	809.0	진입로	대상지경계	대상지경계	
”	진2	3	176	554.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로1	

2) 128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8,287.7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225.0	-	-	6.7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7,062.7	-	-	93.3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8,287.7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1,225.0	-	-	-	
		도 로	852.0	-	-	-	
		광 장	373.0				
휴양 시설	소 계		132.0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휴게쉼터3	-				
	(1)	등의자	-	6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3EA			
녹지 및 기타	소 계		17,062.7	-	-	-	
		녹 지	17,062.7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총 계			214	852.0				
소 로	진1	4	214	852.0	진입로	대상지경계	진입광장	

3) 129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			구성비 (%)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물			
			바닥면적	연 면 적		
총 계		14,211.0	-	-	100.0	
기반시설	도로, 광장 등	1,075.0	-	-	7.6	
휴양시설	휴게쉼터1 외 3종	-	-	-	-	
녹 지 및 기 타	녹 지	13,136.0	-	-	92.4	

나)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시 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	규 모	건축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4,211.0	-	-	-	
도로 및 광장	소 계		874.0	-	-	-	
		도 로	874.0	-	-	-	
		광 장	201.0				
휴양 시설	소 계		-	-	-	-	
		휴게쉼터1	-		-	-	
		휴게쉼터2	-				
	(1)	등의자	-	8EA			
	(1)	파고라	-	1EA			
	(1)	평의자	-	-			
녹지 및 기타	소 계		13,136.0	-	-	-	
		녹 지	13,136.0	-	-	-	

■도 로

등급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총 계			273.0	874.0				
소 로	진1	3.0	11.0	33.0	진입로	대상지경계	광장	
"	산1	2.0	262.0	841.0	산책로	광장	산책로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1	-	54,474.8	1	14,915.7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13,216.8	
			3	13,352.8	
			4	6,500.0	
			5	6,489.5	
산업2	-	58,934.9	1	7,935.2	
			2	9,772.6	
			3	5,868.3	
			4	6,654.8	
			5	5,163.4	
			6	5,768.0	
			7	4,714.7	
			8	4,861.7	
			9	4,155.4	
			10	4,040.8	
산업3	-	31,343.0	1	6,567.0	
			2	6,613.0	
			3	6,657.3	
			4	3,839.1	
			5	2,642.2	
			6	2,646.2	
			7	2,378.2	
산업4	-	81,121.9	1	12,291.1	
			2	12,076.8	
			3	12,205.2	
			4	12,277.3	
			5	12,136.1	
			6	11,055.7	
			7	9,079.7	
산업5	-	48,154.7	1	2,943.1	
			2	2,915.8	
			3	6,124.4	
			4	4,779.7	
			5	10,845.1	
			6	10,182.4	
			7	10,364.2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산업6	-	81,854.7	1	16,583.3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16,666.9	
			3	20,675.9	
			4	6,914.1	
			5	6,915.5	
			6	7,048.8	
			7	7,050.2	
산업7	-	90,903.0	1	4,471.0	
			2	4,471.3	
			3	8,929.9	
			4	8,883.7	
			5	8,910.6	
			6	4,891.9	
			7	4,738.4	
			8	4,470.3	
			9	4,467.9	
			10	8,820.3	
			11	8,993.9	
			12	8,962.9	
			13	4,892.4	
			14	4,998.5	
산업8	-	89,333.7	1	4,891.4	
			2	4,877.9	
			3	8,600.8	
			4	8,560.1	
			5	8,593.6	
			6	8,684.0	
			7	5,248.6	
			8	5,218.0	
			9	8,695.3	
			10	8,657.9	
			11	8,630.9	
			12	8,675.2	
산업9	-	54,997.6	1	6,965.4	
			2	6,986.8	
			3	6,967.5	
			4	3,180.5	
			5	3,132.1	
			6	7,012.4	
			7	7,176.3	
			8	7,197.2	
			9	3,253.5	
			10	3,125.9	

도면표시 번 호	가 구 번 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산업10	-	54,548.9	1	3,099.2	• 분할 가능 (1,650㎡이상) • 합병 가능
			2	3,113.5	
			3	6,861.8	
			4	6,869.7	
			5	6,837.2	
			6	3,217.5	
			7	3,290.6	
			8	7,175.2	
			9	7,064.3	
			10	7,019.9	
산업11	-	46,227.1	1	7,797.2	
			2	7,861.7	
			3	7,323.3	
			4	7,725.1	
			5	7,995.7	
			6	4,076.6	
			7	3,447.5	
산업12	-	20,292.3	1	4,086.6	
			2	4,078.9	
			3	4,034.3	
			4	4,051.1	
			5	4,041.4	
산업13	-	33,767.8	1	11,354.1	
			2	11,830.1	
			3	10,583.6	
산업14	-	48,332.2	1	4,478.1	
			2	9,891.0	
			3	8,962.0	
			4	7,785.1	
			5	5,218.6	
			6	4,337.0	
			7	3,913.0	
			8	3,747.4	
산업15	-	17,079.9	1	8,345.7	
			2	8,734.2	
산업16	-	42,798.4	1	14,225.8	
			2	14,241.6	
			3	14,331.0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지원1	-	5,142.9	1	603.0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624.1	
			3	624.4	
			4	740.7	
			5	696.9	
			6	623.7	
			7	624.4	
			8	605.7	
지원2	-	3,816.4	1	532.7	
			2	534.8	
			3	1,646.4	
			4	574.3	
			5	528.2	
지원3	-	13,566.0	1	1,470.1	
			2	1,479.7	
			3	1,875.2	
			4	1,874.9	
			5	1,862.6	
			6	1,873.5	
			7	1,866.8	
			8	1,263.2	
지원4	-	11,919.0	1	1,452.6	• 분할 불가
			2	1,824.0	• 분할 가능 (단 2필지) • 합병 가능
			3	8,642.4	
지원5	-	9,907.5	1	72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723.1	
			3	720.5	
			4	719.4	
			5	719.1	
			6	498.6	
			7	498.6	
			8	661.4	
			9	662.3	
			10	661.5	
			11	663.8	
			12	661.4	
			13	667.3	
			14	663.3	
			15	663.3	

도면 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지원6	-	3,385.2	1	1,053.9	• 분할 불가 • 합병 가능
			2	1,027.7	
			3	801.1	
			4	502.5	
지원7	-	4,561.4	1	1,175.0	
			2	1,181.7	
			3	1,180.3	
			4	1,024.4	
지원8	-	4,821.5	1	231.7	
			2	231.9	
			3	232.1	
			4	231.8	
			5	231.5	
			6	232.6	
			7	234.0	
			8	234.0	
			9	233.6	
			10	233.9	
			11	233.5	
			12	232.2	
			13	338.7	
			14	331.9	
			15	333.2	
			16	333.5	
			17	229.7	
			18	231.2	
			19	230.5	
지원9	-	8,524.7	1	1,086.9	
			2	1,552.9	
			3	1,503.7	
			4	1,505.3	
			5	1,491.8	
			6	1,384.1	
지원10	-	17,092.3	1	1,911.6	• 분할 가능
			2	1,900.0	
			3	1,874.5	
			4	6,510.7	
			5	4,895.5	
지원11	-	9,449.9	1	1,180.1	• 분할 가능
			2	1,186.3	
			3	1,186.0	
			4	1,184.5	
			5	1,178.6	
			6	1,186.0	
			7	1,186.0	
			8	1,162.4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²)	
계		9,277.0	-	9,277.0	
주80	-	2,934.3	-	2,934.3	
주81	-	651.7	-	651.7	
주102	-	3,969.6	-	3,969.6	
주103	-	555.6	-	555.6	
주104	-	1,165.8	-	1,165.8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 ²)	
오수12	-	500	-	500	

5)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m²)	
계		91,476.9	-	91,476.9	
자동차정류장6	-	28,511.0	-	28,511.0	
자동차정류장7	-	62,965.9	-	62,965.9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계		21,873.8	-	21,873.8	
청사33	-	4,000.0	1	4,000.0	
청사33-1	-	5,864.1	1	5,864.1	• 합병가능
청사33-2	-	6,858.2	1	6,858.2	
청사33-3	-	5,151.5	1	5,151.5	

7) 해수유입시설(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 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계		187.4	-	187.4	
해수1	-	100.0	-	100.0	
해수2	-	87.4	-	87.4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용도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 <tr> <td>보조색</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 </table>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4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4-3, 4, 5, 6 필지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4-1, 2, 7 필지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변경> - C10 : 식료품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 조 색	
				N9
				5G 9/1
				5G 8/1
		보 조 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 조 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6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변경>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 채		주 조 색				
					N9	5G 9/1	5G 8/1	5G 8/2
				보 조 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 조 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5, 7, 8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부합하는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심사를 득한 업종으로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 - 제한업종 <기정>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C28 : 전기장비제조업 <변경> • C10 : 식료품 제조업 C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C1392끈,로프,망및끈가공품제조업 제외)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C192)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중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C233,C239)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992 연마재 제조업 제외)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 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피크를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 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9, 10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변경>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보조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1, 12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변경> - C26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 C28 : 전기장비제조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보조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3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변경> • C23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3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C239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외)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색채	보조색	5G 8/2
				5G 8/6
				5G 7/6
				5GY 7/6
		색채	강조색	5GY 5/6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4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보조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용지 (변경)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산업15, 16	용도	허용용도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 해당업종 <기정>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변경> • C12 : 담배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조업, • C30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 C31 : 기타 운송관련 제조업, • D35 :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 H49(H493)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도로화물운송업 • H49(H494) :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중 소화물전문운송업 • H52 :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 부대 및 편의시설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부대 및 편의시설의 총합은 주(主)시설면적을 초과하지 못함.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설치시 건축물의 연면적 총합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산업용지에서 생산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도로경계부에서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 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고 도로부에 차폐식재를 권장한다.
		형태		• 굴뚝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토록 함 •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해야 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전기전화통신설비, 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1층높이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하거나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지붕·옥상은 슬라브형을 지양하고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이용객 및 상근인구의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한다. • 옥외창고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탑·냉각탑의 설비는 도로쪽에서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보조색	5G 8/6	5G 8/2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7, 9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주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 <tr> <td rowspan="2">보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 <tr> <td rowspan="2">강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 </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8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의 경우 1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호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200% 이하)																		
		높이/세대수		최고층수 : 5층 이하(단독주택의 경우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6세대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조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N9</td><td>N8</td><td>5B 9/2</td><td>5G 8/2</td></tr> <tr> <td>보조색</td><td>5Y 8/6</td><td>5Y 6/4</td><td>5YR 6/4</td><td>5YR 5/4</td></tr> <tr> <td>강조색</td><td colspan="2">5Y 3/4</td><td colspan="2">5YR 3/4</td></tr> </table>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0, 1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를 제외한다),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형태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1층 높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 시설설치를 권장한다. - 지원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건축물의 보안상 필요할 경우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벽의 재료, 형태> - 전면부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안상 투시형 벽면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table border="1"> <tr> <td>주 조 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5BG 8/1</td><td>5BG 8/2</td><td>10B 8/1</td><td>10B 8/2</td></tr> <tr> <td>보 조 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5BG 6/2</td><td>8.75B 6/4</td><td>3.75B 7/2</td><td>3.75B 6/4</td></tr> <tr> <td>강 조 색</td><td></td><td></td><td></td><td></td></tr> <tr> <td></td><td colspan="2">10BG 4/4</td><td colspan="2">5B 3/2</td></tr> </table>	주 조 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 조 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 조 색						10BG 4/4	
주 조 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 조 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 조 색																																
	10BG 4/4		5B 3/2																													

3) 주차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주80~81, 102~104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N8	5B 9/2	5G 8/2
				보조색				
5Y 8/6	5Y 6/4				5YR 6/4	5YR 5/4		
강조색								
	5Y 3/4		5YR 3/4					

4)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오수 중계 펌프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오수12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 조 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 조 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 조 색								
		10BG 4/4		5B 3/2					

5) 자동차 정류장(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자동차 정류장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자동차정류장 6·7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영차 고지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N9 5G 9/1 5G 8/1 5G 8/2
			보조색	5G 8/6 5G 7/6 5GY 7/6 5GY 5/6
			강조색	5G 3/4 5GY 3/4

6)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청사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공공청사33, 33-1, 33-2, 33-3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치		-
		형태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7) 해수유입시설(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해수유입 시설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해수1, 2	용도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취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주조색	5BG 8/1	5BG 8/2	10B 8/1	10B 8/2	
			보조색	5BG 6/2	8.75B 6/4	3.75B 7/2	3.75B 6/4	
			강조색	10BG 4/4		5B 3/2		

사.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산업 시설 용지 (변경없음)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산업1~16	획지 분할 및 합병	- 산업시설의 종류 및 업종에 적합한 규모의 필지가 되도록 한다. - 대지 분할시 최소면적은 1,650㎡ 이상 되도록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한 적정 세장비(가능하면 1:1~1:2 범위내)를 고려하여 분할 또는 합병하도록 한다.	
		옥외 광고물	기본 원칙	- 건축물의 재료, 형태, 규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원칙으로 함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형광색 등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하며 사용가능한 색의 수를 4색 이내로 제한
			가로형 간판	- 산업시설의 간판은 벽면 부착형 입체문자 간판을 기본형으로 함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요 도로에 접한 입면의 상단부의 적정 위치에 설치 - 간판 조명은 채널방식으로 LED를 사용하여 단색으로 설치 - 조명은 백색 광원을 기준으로 하며 점멸 등 효과 금지
			지주 이용 간판	-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음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 시설 용지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지원1~11	획지 분할 및 합병	- 지원시설용지의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건축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 지원10BL 및 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제외) - 획지의 합병은 인접대지에 대하여 합병할 수 있다 - 대지분할가능선이 지정된 획지는 그 선에 따라 분할할 수 있으며, 지정된 대지 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면적의 30%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획지구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단 2필지) - 도면표시 : 대지분할가능선				
		옥외 광고물	<table><tr><td>가로형 간판</td><td>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r><td>돌출형</td><td>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td></tr></table>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가로형 간판	- 광고물의 수는 업체당 1개를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각각부에 위치한 업체에 한하여 이면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간판의 가로 크기는 그 건물의 폭의 80퍼센트 이내, 최대 크기는 10미터 이내, 세로 크기는 1.2미터 이내로 설치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돌출형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2.5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이내와 연립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14미터(상업지역은 2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건축연면적이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목포시 건축조례 기준에 의한다.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 포함)도 : 게재생략

7. 대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가.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나.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해당없음) : 사업준공 완료(2017년 4월 27일)로 해당사항 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목포시청(기업유치실 061-270-8970) 및 목포대양산단주식회사(사업개발본부 061-277-9667, 9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